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제2011-593호

예고기간 : 2011. 12. 1 ~ 21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팀, 협회 제도연구실(02-2182-0710~4)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협회(www.keea.or.kr)

제안이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등의 등록신청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 야함(안 제45조 2항 및4항 신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안내

부 령 : 제23272호

공포일자 : 2011. 10. 28

담당부처 : 소방제도과(02-2100-5333)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mopas.go.kr)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며,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안 별표 4)

노유자시설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노유자시설에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안 제20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 1)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함
-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시키고, 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이들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를 추가함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 1)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하도록 함
- 3) 아파트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을 면제하고, 연결살수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기준을 개선함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입법예고

부 령 : 제2011-162호

예고기간 : 2011. 11. 22 ~ 30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02-2100-5333)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mopas.go.kr)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등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절차(안 제2조 개정)

-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 적발 시 사용폐쇄와 같은 강력한 의법조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특별조사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개정(안 제4조 개정)

-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에 대하여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건축허가등의 동의 기간을 조정하여 소규모는 5일로 단축하고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

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방법 등 규정(안 제20조의2신설)

-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 포상, 평가위원회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방법 등(안 제26조의2, 제26조의3신설)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방법과 평가의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의 공시방법 등 세부사항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부착방법 등의 규정을 정함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험 응시자격 등 세부규정 신설(안 제14조, 제32조, 별표6)

-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새로이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절차, 전문기술 습득에 필요한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 수수료, 시험자격기준 등 세부규정을 신설함

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에 관한 인원·자격자·점검횟수 등 세부사항 규정(안 별표1)

- 소방설비 점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 대신 연2회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체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사.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처리기간 일원화(별지9호, 별지22호개정)

- 방염처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5일로 단축

아.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9개정)

-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방염업 등록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과 맞도록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안내

부 령 : 제403호

공포일자 : 2011. 11. 18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02-2110-6306)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 및 합병에 따른 영업실적 승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671호, 2011.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신고 등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안내

부 령 : 제23299호

공포일자 : 2011. 11. 16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02-2110-6306)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671호, 2011.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조제를 대상에 추가하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 시설을 1종시설물로 정하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10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 계류 시설, 방조제 및 다기능 보(伏)를 추가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지식경제부) 사례

1. 신청인의 명의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등록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명이나 지인의 명의로 감리업을 추가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소유 및 경영하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에서 업등록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가족 명이나 지인 명의로 감리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등록과 실적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인터넷 민원질의 2010. 2. 18)

2.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건축설계용역비를 산정하려고 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전기분야에서 전력기술관리법만을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에서 비교하여 용역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계업자(법 제14조에 따라 등록)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는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리부가 고시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운영요령 별표 1 참고).

•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용역대가는 정보통신공사사업법령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가의 기준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참고).

• 아울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경부공고) 제6조 (대가의 준용)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2. 26)

3.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아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공사현장의 여건(혹한기·폭설·우기 등)에 의해 계약서상의 감리 착공예정일이 감리자 모집당시의 착공 예정일보다 약 1.5개월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질의) 위와 같은 착수지연에 의한 공사감리기간의 축소 및 공사 지연에 의해 계약서상의 완료 예정일이 경과되어 공사감리기간이 증가될 경우 감리 용역금액의 조정여부를 문의합니다.

- 우리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 등을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리대가 산정방식에서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과 “정액 적산방식”은 전기공사비로 감리대가 및 배치기준을 산정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감리비 정산 요인이 될 수 없으나,
- “실비정액가산방식”(공동주택 감리대가)은 전기공사비가 아닌 감리원의 실 배치일수(공사기간)에 따라 감리대가 및 배치일정이 산정되므로 전기공사 기간(감리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감리비 정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전기공사 공정이 연기되어 그에 따라 공사감리용역 기간이 순연된 경우(전체 기간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용역 기간의 계약변경을 통해 준공까지 감리업무를 수행 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2. 24)

4. 계약사항

- 00도시 조성공사(LH공사에서 시행)가 1, 2 공구로 분할되어 시행
- 단지내 전력시설물 간선설치공사가 1공구에 대해서 2008년 계약되어 시행중
- 1공구 전력시설물 설치공사 감리용역도 2008년 계약되어 시행중(진도율 60%)

2. 질의 내용

- 이미 계약된 1공구 전력시설물 설치공사 감리 용역에 추가하여 2공구 전력시설물 설치공사 감리용역을 통합감리로 변경하여 추가설계후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3. 참고사항 : 통합감리 수행시 지중배전설비의 관로연결, 구조물 설치의 일원화 등 공정관리에 유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는 전력시설물 공사 현장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에 이동거리가 30km(특별·광역시인 경우 10km) 미만인 경우 이를 통합 하여 감리를 발주할 수 있으며, 운영요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각각의 전력시설물공사 예정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감리 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당초 1·2공구를 통합감리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1공구를 단독감리로 발주하여 공사감리 수행 중 2단지를 추가로 발주하여 통합감리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상규규정을 적용하여 통합감리 수행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3. 2)